

4.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2000-39호 2000. 2. 11

개 정 이 유

주택건설촉진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·공포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유동화를 위하여 대출자산의 매각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, 60㎡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허용하는 등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기술인력을 4인 이상 확보한 경우에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나 이를 3인으로 완화하여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운 주택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운 주택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과 함.
- 나.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방법은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액면 매각·할인 매각 또는 할증매각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, 매각절차는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매각하도록 함.
- 다.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형주택을 50%이상 건설하는 때에는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국·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.
- 라. 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60제곱미터이하의 소형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도 주택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조합주택 건설을 촉진하고자 함.

주택희보